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7.9.(화) 16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7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, 안 제6조)
- 나.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(안 제8조)
- 다.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,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’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

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에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.